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회계감사 예외규정 적용 배제, 환매연기 사유 추가, 보고의무 신설, 제재근거 마련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 도입 (안 제211조의2 신설)

- 1) 아시아 5개국간 체결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요건,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환매연기 사유 등을 정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246조) 및 조치(안 제275조의2 신설)

- 1)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회계감사 등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내용을 정하기 위함
-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판매되는 외국정부에 통지하도록 함

다.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도 도입(안 제301조)

- 1)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간소화된 국내 등록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2) 외국에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안 제211조의2에서 정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적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함

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처분(안 [별표 5]) 및 업무 위탁(안 [별표 20])

- 1) 위법한 교차판매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제재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업무 위탁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변경등록, 고유등록번호의 부여 등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이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일 것
2.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그 밖에 임원 및 운용인력의 자격, 조직 구성 등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통화

나. 예금

다. 증권

라. 금 예탁증서(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양의 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

바.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및 제한 등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에 대해서는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제2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5호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교차판매협약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2호에서도 같다.

제26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제5편 제8장에 제2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나 투자
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하
여야 한다.

제3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9조제2항 전단”을 “법 제279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을 각각 “법 제279조제2항제1호”로 하
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1.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
2.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3.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정부가 부여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
구 고유등록번호를 제출할 것

⑥ 금융위원회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대한민국 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국에서 등록 거부, 판매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별표 5 제1호의2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별표 5 제1호의28을 제1호의29로 한다.

1의2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의 28. 법 제249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별표 20 제59호 중 “접수”를 “접수(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요구”를 “요구(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공고”를 “공고(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2호 본문 중 “제4항”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 취소 및

같은 조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37호의3 및 제14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의3. 제211조의2제6항에 따른 고유등록번호의 부여

143의2. 제27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실의 통지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등) ①</u> <u>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이란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를 말한다.</u> <u>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을 말한다.</u> <u>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일 것</u> <u>2.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u>

갖출 것

3. 그 밖에 임원 및 운용인력의
자격, 조직 구성 등 교차판매
협약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
다.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산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
매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
으로 운용할 것

가. 통화

나. 예금

다. 증권

라. 금 예탁증서(대한민국 또
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
영하는 법인이 증서 보유
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양의 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단기금융상품

바.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

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재

산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

용방법 및 제한 등 교차판매

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

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에 대해서는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

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

구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그 집

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법 제2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환매청구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지분 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다만, 제256조제5호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교차판매협

<신 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

----- . 다만,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 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 4. (생략)

③ (생략)

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①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1.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79조제2항제1호-----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법 제279조제2항제1호-----

⑤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
2.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추는 것
3.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정부가 부여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고유등록번호를 제출할 것

⑥ 금융위원회는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
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
적격 요건에 대해서는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
국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
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대한민국 정부가 교차판매협
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
국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국에서
등록 거부, 판매제한 또는 이
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73